광주 용봉 엘리체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북구청 건축과 - 27585호(2011.08.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접수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 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 및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전매제한기간 없음)

구 분	분양권 전매 제한	재당첨제한
전용면적 85㎡이하	없음	3년

※ 단, 재당첨제한 대상자라 하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2012.3.31 이전인 민영주택은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제한기간 종료여부에 상관없이 청약 및 당첨이 가능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가 개정될 경우 제한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제한은 계속적용되고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방법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기존 주택형 표기방식(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내역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961-1번지 외 25필지
• 규모 및 내역 : 지하2층, 지상 17~22층 아파트 5개동 430세대 [특별공급 108세대(일반특별공급 43세대, 다자녀특별공급 22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대지면적 : 18,186.0㎡
• 면적 및 금액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공급면적 주거전용	공급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특별공급 일반특별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일반분양 세대수	계
민영	2011000772-01	59.8570	59.8570	31.0101	90.8671	26.2294	117.0965	34.5232	23	12	23	177	235
	2011000772-02	59.5783	59.5783	31.7572	91.3355	26.1073	117.4428	34.3625	4	2	4	25	35
	2011000772-03	84.5816	84.5816	35.3235	119.9051	37.0639	156.9690	48.7834	16	8	16	120	160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천원)

주택형(㎡)	층별구분	세대수	분양가격 대지비	분양가격 건축비	분양가격 계	계약금 1회(5%) 계약시	계약금 2회(5%) 11.10.15	중도금 1회(10%) 12.01.15	중도금 2회(10%) 12.04.15	중도금 3회(10%) 12.08.15	중도금 4회(10%) 12.11.15	중도금 5회(10%) 13.02.15	중도금 6회(10%) 13.06.15	잔금(30%) 입주시
59.8570	1층	4	47,528,147	113,971,853	161,500,000	8,075,000	8,075,000	16,150,000	16,150,000	16,150,000	16,150,000	16,150,000	16,150,000	48,450,000
	2층	12	47,528,147	116,471,853	164,000,000	8,200,000	8,200,000	16,400,000	16,400,000	16,400,000	16,400,000	16,400,000	16,400,000	49,200,000
	3층	12	47,528,147	119,471,853	167,000,000	8,350,000	8,350,000	16,700,000	16,700,000	16,700,000	16,700,000	16,700,000	16,700,000	50,100,000
	4층	12	47,528,147	121,971,853	169,500,000	8,475,000	8,475,000	16,950,000	16,950,000	16,950,000	16,950,000	16,950,000	16,950,000	50,850,000
	기준층(5~10)	72	47,528,147	123,971,853	171,500,000	8,575,000	8,575,000	17,150,000	17,150,000	17,150,000	17,150,000	17,150,000	17,150,000	51,450,000
	기준층(11~최상층)	123	47,528,147	124,971,853	172,500,000	8,625,000	8,625,000	17,250,000	17,250,000	17,250,000	17,250,000	17,250,000	17,250,000	51,750,000
59.5783	1층	0	47,402,264	0	0	0	0	0	0	0	0	0	0	0
	2층	2	47,402,264	115,597,736	163,000,000	8,150,000	8,150,000	16,300,000	16,300,000	16,300,000	16,300,000	16,300,000	16,300,000	48,900,000
	3층	2	47,402,264	119,097,736	166,500,000	8,325,000	8,325,000	16,650,000	16,650,000	16,650,000	16,650,000	16,650,000	16,650,000	49,950,000
	4층	2	47,402,264	121,297,736	168,700,000	8,435,000	8,435,000	16,870,000	16,870,000	16,870,000	16,870,000	16,870,000	16,870,000	50,610,000
	기준층(5~10)	12	47,402,264	122,797,736	170,200,000	8,510,000	8,510,000	17,020,000	17,020,000	17,020,000	17,020,000	17,020,000	17,020,000	51,060,000
	기준층(11~최상층)	17	47,402,264	123,997,736	171,400,000	8,570,000	8,570,000	17,140,000	17,140,000	17,140,000	17,140,000	17,140,000	17,140,000	51,420,000
84.5816	1층	4	66,250,914	154,749,086	221,000,000	11,050,000	11,05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66,300,000
	2층	8	66,250,914	157,749,086	224,000,000	11,200,000	11,2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67,200,000
	3층	8	66,250,914	161,249,086	227,500,000	11,375,000	11,375,000	22,750,000	22,750,000	22,750,000	22,750,000	22,750,000	22,750,000	68,250,000
	4층	8	66,250,914	165,249,086	231,500,000	11,575,000	11,575,000	23,150,000	23,150,000	23,150,000	23,150,000	23,150,000	23,150,000	69,450,000
	기준층(5~10)	48	66,250,914	167,949,086	234,200,000	11,710,000	11,710,000	23,420,000	23,420,000	23,420,000	23,420,000	23,420,000	23,420,000	70,260,000
	기준층(11~최상층)	84	66,250,914	168,549,086	234,800,000	11,740,000	11,740,000	23,480,000	23,480,000	23,480,000	23,480,000	23,480,000	23,480,000	70,440,000

■ 공통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당사에서 층별로 적의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각 주택형별 공히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아파트 전체 대지지분과 세대당 대지지분의 합계지분차이(0.0165㎡)는 101동 101호에 가산함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함.)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청약당첨자 분양계약 시 선택이 가능한 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분양계약시 선택사항임.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된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다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받으며, 나머지 금액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단, 대지권에 대한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반환됨)
• 주택가격(분양대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건축공정이 30%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경우 익일 최초은행영업일을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로 함
• 본 주택의 중도금은 당사와 대출관련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 할 수 있음(단, 대출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일부세대는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동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 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서 전방 문토록 할 예정임 • 특별공급 신청미달분은 신청동별로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2주택 이상을 소유한[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포함)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분은 1순위청약이 제한(2순위로 청약가능)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자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 일정

1. 특별공급 신청세대 공통사항
1) 신청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자	시 간	장 소
특별공급 신청	2011.08.30(화)	10:00 ~ 14:00	당사 견본주택
특별공급 선정		14:00	

※ 당첨자 선정공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배정함(동·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주택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2)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3) 특별공급 유의사항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음
•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부적격처리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할 경우에는 특별공급 당첨이 취소 처리 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공급 당첨자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당첨자로 관리되며, 해당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2조에 의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에 있는 자는 본 주택의 당첨이 취소됨
• 기재사실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으며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지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않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당첨된 사실이 있는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간주, 해당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주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 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7호),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함)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① 전용면적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6개월이 경과한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약정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지역별/면적별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자 중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지역별/면적별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중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한 신청가능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최초 선택일(직전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함

2. 일반특별공급(85㎡이하 건설량의 10% 범위 내)

주택형(전용면적)㎡	59.8570	59.5783	84.5816	계
세 대 수	23	4	16	43

1)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철거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또는 군인)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1.08.25) 현재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무주택 세대주로서 특별공급대상으로 해당 단체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대상 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2) 일반특별공급 구비서류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일치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인정서만인정함(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등 기타서류 불가)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공통	• 특별공급신청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1통(이래 해당자에 한함.) – 이혼·이중·사별·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 •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증 복지카드 사본 1부(장애인 특별공급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기재 1통) • 전용면적85㎡이하 주택 청약용 청약예금, 부금 가입증명서(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기재) 1통 – 청약자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견본주택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대리신청자의 도장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1개월 이내 발행)용도란은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제출하시기 바람.
※ 재혼으로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자녀 중 전부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함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관계확인 등이필요한 경우반드시 "세대주 성명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3. 다자녀특별공급(85㎡이하 건설량의 5% 범위 내)

주택형(전용면적)㎡	59.8570	59.5783	84.5816	계
세 대 수	12	2	8	22

1)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11.08.25)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인 직계 자녀 3명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중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6개월이상 가입하고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별표 1의2에 따른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무주택이면 신청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이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이 안 됨)
• 입주자 선정방법 : 다자녀특별공급 배점표에의한 점수 순에따라 대상자를선정하게 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기존에 특별공급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청약이 불가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물량은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시 배정됨

2) 다자녀특별공급 시 배점기준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 준		점수	비 고
계	100	–		–	
자녀수 (1)	40	미성년 자녀	4자녀 이상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10	영유아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 (3)	20		세대주가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가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시·도 거주기간(4)	20		10년이상	20	• 세대주가 광주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 (1),(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의 순으로 공급함

3) 다자녀특별공급 대상자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공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및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다운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및 당해 시·도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추가) • 주민등록초본1통(본인이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이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미혼·이혼·사별·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기재) 1통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청약용 청약예금 부금 가입증명서(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대리신청자의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날인된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및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필요한 경우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에 대한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또는 확인결과 배점요소자격이 다르거나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당첨 취소 및 분양계약취소됨이후라도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함. 다만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그 말소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이를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봄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후 세대주의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함.
① 세대주가사망한 경우 ② 세대주가결혼 또는이혼한 경우 ③ 세대주의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4. 신혼부부 특별공급(85㎡이하 건설량의 10% 범위 내)

주택형(전용면적)㎡	59.8570	59.5783	84.5816	계
세 대 수	23	4	16	43

•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자 중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하여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자
• 자녀를 입양하신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자로 처리되어 향후 사전에 신청이 제한됨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 낙태관련진단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서류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됨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될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1)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 서약서(당사 견본주택에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1통 • 주민등록등본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추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증명서(혼인일 확인) : 본인발급기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발급기준) 출생일자 확인 필요한 기본증명서(자녀 발급기준)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입양의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소득 입증서류 • 전용면적85㎡이하 주택 청약용 청약예금, 부금 가입증명서(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서류를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기재) 1통 – 청약자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견본주택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대리신청자의 도장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
※ 201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등 계정고시)

구 분	201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통계청 고시)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4,007,671원 이하	4,447,007원 이하	4,709,765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120%)	4,809,205원 이하	5,336,408원 이하	5,651,718원 이하

• 2010년부터는 '6인 이상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작성, 발표하지않는 관계로 '6인이상 가구'도 5인 이상 월평균 소득이 적용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람
• 출산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현재 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배우자와동일한 주민등록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를 포함하여산정
•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상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소득합산이며, 세대주의 배우자가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만 20세 이상 직계존비속의 소득도 합산
• 세대원의 실종, 별거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경우에는 주민등록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경우 군복무자의 소득은 없는것으로 간주하며,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 소득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경우에는 대표자가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에 7항 및 9항에따라 혼인기간이 3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1순위로 하고,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2순위로 하며제1순위 및 제 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녀수가 많은 자, 자녀수가 같은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자 순으로 입주자를선정한다.

■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08.25) 현재 광주광역시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도 포함),[국내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기준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단, 광주광역시보다 예치금액이 큰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후 전입한 경우 변경하지 않아도 청약가능]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당첨자로 재사용이 불가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체의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받게 될 수 있음.
• 주택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재사용이 불가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분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약모두를 무효처리함.
• 2012.3.31까지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적용이 한시적으로 배제됨에 따라 재당첨 제한 대상자의 세대에 속한자도 정당한 청약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음

1.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 청 자 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
민영주택	1순위	공통	가점제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에 속한 분[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은 감점 대상임	광주 광역시	2011 08.31 (수)	•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이외의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접수시간 08:00 ~ 17:30	• 일시 : 2011.09.08(목) AM 10: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2011.09.08(목) 광주일보 게재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첨제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 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 됨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85㎡ 이하 주택형만 신청가능)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중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11.08.24)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1순위가 된 자 중 납입인정된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되고 1순위인 청약부금을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 (85㎡초과주택에 한함)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호 또는 2주택을 소유[청약자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로 청약가능) ※ 아래 주택소유에관한 유의사항 참조				
	2순위	공통	가점제 대상자	• 2순위 청약자 전원(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우선 청약접수)		2011 09.01 (목)		
			추첨제 대상자	•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됨				
		전주택형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 하는 분				
	3순위	공통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 되지 않는 분		2011 09.02 (금)	• 접수장소 : 광주은행 본·지점 및 인터넷 (www.kjbank.com) • 접수시간 : 본지점:09:00~16:00 인터넷:08:00~17:30	

※ 상기일정표 중 접수마감시간 본지점 : 16:00, 인터넷 : 17:30은 청약접수완료 기준으로, 청약접수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되지 않고 17:30분이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및 당첨사실 판단 대상: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또는 배우자와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원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등을 제외하고는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노약자·장애우 창구 청약가능 시간 : 09:00 ~ 16:00, 단 청약통장가입은행(3순위는 광주은행에서만 가능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및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조의 3·4항 관련)

구분(전용면적기준)	광주광역시	비 고
85㎡ 이하	250만원	
102㎡ 이하	400만원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신청 가능

3.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1) 청약 신청가능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된 청약저축에서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전환일, 기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2년경과 시 마다 신청가능 전용면적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예치금액으로 변경해야 함.

2) 신청가능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단, 변경일 이전 공고된 주택에 청약시 변경전 큰 면적으로만 청약신청가능)
• 큰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경과한 자는 변경 후 면적만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전 전용면적만 청약신청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신청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의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하며,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선택한 이후에는 최초 선택일(직전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이 가능한 주택규모로 변경이 가능함.

■ 신청 접수 방법

1. 특별공급 (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 2011.08.30 (화,10:00 ~ 14:00)당사 견본주택에서청약신청
2. 일반공급
1) 공 통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구분하여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신청자 수가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2) 1, 2순위
• 1, 2순위 : 1순위 청약자 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됨.
• 1순위청약자 중 추첨제 대상자에한해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 청약자는입주자 선정방법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등에 따라 자동분류 접수됨.
3)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3.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 사항
• 청약신청 시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증빙서류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확인한 후에입력해야함.

■ 가점제 및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

1. 청약가점제 관련 유의 사항
•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1, 2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선정함.

구분(전용면적)	가 점 제	추 첨 제
85㎡ 이하	75%	25%

• 가점제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 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에의한 높은 점수순에 따라 입주자를선정함.
• 청약 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17점) 등 총 84점 • 가점제에서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자동으로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후에 당첨자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입력해야 함.
• 인터넷청약절차에 대한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2.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확인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 자동으로 계산 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④ 감 점		아래의 "감점산정기준" 참고				
계	84	본인의 청약가점 점수 ①+②+③-④				

3.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구 분	내 용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이에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3년 이상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함

4. 감점 산정기준

구 분	감점항목 기 준		감점점수
1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 수마다 5점씩 감점됨	2호 또는2세대	–5
		3호 또는3세대	–10
		:	:
2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 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됨	2호 또는2세대	–10
		3호 또는3세대	–15
		:	: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소유 주택 : 2주택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주택 수마다 5점씩 감점됨.
※ 만60세 이상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에 의거 신청자격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상기 감점기준을 적용됨.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소유주택 : 2주택이상인 경우 주택 수마다 5점씩감점.
※ 만60세 이상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가점제 청약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이나, 주택소유에 대한 감점은 없음.
※ 감점점수가 전체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5. 주택소유에 대한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에 한함]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함)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3) 기타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 : 시장또는 군수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날
• 건물의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은전국에 소재하는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되고 있는주택이 포함됨.
• 다음에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것으로 봄.
1) 상속으로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처분한 경우
4)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주택소유자는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경우
7)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다른 용도로 사용되고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3개월 이내 이를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있는 경우

6. 소형·저가주택 1호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민영주택 또는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경우에 한해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장기간 보유특례)
1)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소형·저가주택을 10년 미만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
(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총전무주택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2) (현재 :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 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

구 분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한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가입한 분
이용대상	• 청약통장 가입은행(3순위는 광주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 1,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3순위 : 광주은행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이 있는 자(단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및 절차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www.apt2you.com)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 은행창구 청약 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광주은행 본·지점 비치) • 청약예금통장(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구비(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개월 이내 발급분)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3순위자청약신청금 [※광주은행 본·지점 창구 신청접수 또는 인터넷 신청 접수 가능]

구 분	전주택형	신청금 납부방법(영업점창구 청약자에 한함)
청약신청금	100만원	창구 청약 시가능한 한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바랍니다.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2011.9.9(금))이후평일 09:00 ~ 16:00(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접수한 광주은행 본·지점 [단, 청약자 본인의광주은행 계좌로 이체 신청한 분과 인터넷으로청약하신 분은 당첨자발표 익영업일에 해당계좌(인터넷청약자는 신청금 출금 계좌)로 자동환불 됩니다]
• 환불대상 : 3순위청약자(당첨자 포함)
• 구비서류
① 본인 또는 배우자환불 시 :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당첨자는 사본 제출) 본인확인증표(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청 시 사용한인장 또는 본인·배우자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 시에 한함)
② 제3자 대리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영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위임 시는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위임장
• 제3순위 신청금에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제3순위 당첨자의신청금은 계약 시 계약금의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광주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별도로 계약 체결해야 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는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함)하며, 동·호수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무작위 추첨배정함 • 특별공급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추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컴퓨터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해당 거주 지역추첨제 대상으로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단 1순위자 중 1주택소유자는 청약접수 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 당첨자의 계약체결기간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등은 연락처를 통보한 예비당첨자에 한하여 별도통보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당첨된 예비당첨자는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인터넷, ARS당첨자 발표 이용 안내

• 본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부가 서비스이므로 반드시 당첨자발표 장소 등에서 당첨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금융결제원(국민은행 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 한분)
인터넷/ARS	이용기간		2011.9.8(목) ~ 2011.9.17(토) (10일간)	
	이용방법	인터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금융결제원(www.apt2you.com)홈페이지 접속 → 당첨사실조회 → 주택별 조회
		전화ARS	☎1588-9999(서비스코드 : 913)	☎1369(서비스코드 : 5#)
휴대폰문자 서비스(SMS)	제공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고 문자 수신에 동의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1.9.8(목) AM 10:00 (제공시간은 각 은행 및 금융결제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광주은행에 청약접수 시 휴대전화번호를 신고한 경우당첨발표일(영업시간 이전)에 휴대폰으로 문자서비스 제공(단, 당첨자에한함)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구 분	계 약 기 간	계약장소
정당당첨자	2011. 9. 14(수) ~ 2011. 9.16(금) (3일간, 시간 09:00~16:00)	당사 견본주택

• 각 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현황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5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당첨자는 계약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업자 일방에 의하여 계약은 취소됨.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하는본 ·지점 무통장 입금(타행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전액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됨.

구 분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비 고
금융기관명	광주은행	• 입금시 비고란에 동·호수, 성명 필히 기재 요망 •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대금 계좌를 필히 확인 후 입금 요망
계좌번호	137-107-156704	
예금주	에스이엔씨(유) (외1)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정당당첨자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단 인터넷 모바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제출생략)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현장수납 불가)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아파트 계약용) 및 인감도장 • 본인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 등·초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사본1부) – 주택소유 현황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경우) • 계약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 주민등록 초본(3년 이상 거주 등본상이동만 시) •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1통(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통보를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형·저가주택임을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여(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발행 된분, 주민등록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08.2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 외국인은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표기를 요청하여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가능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1호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사용이 불가하여 당첨자로 관리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사실임을 증명하는경우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됨)
①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등)을 허위 또는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② 1순위 당첨자 중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1순위가점제 당첨자는1주택이상) 이상 소유자로판명될 경우.
③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및 당첨 사실을 포함하며 금융결제원에 재당첨유무를 검색하고 특별공급자 및 1순위 가점제 대해 유주택 및 그 세대원(분리세대 대해 유주택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주택소유 현황 및 소유현황을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동일한 청약관련통장을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다른 아파트 청약신청 시 1순위 자격 등의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이미 행하여진청약은 무효로 하고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후라도 당첨취소및 고발조치함.
• 주택공급규칙을 위반및 청약관련예금 등을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 이미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당첨계좌 재사용 불가함.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수 있으므로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1~3순위 및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는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 재당첨금지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1,2순위 당첨자)함.
•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각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모두 계약체결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않음.
• 광주광역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가 본 아파트에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주택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7조를 적용함.

■ 분양대금 융자지원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나, 관련정책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금융기관에 사전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시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직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별도로 통지하지않음(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조]및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산정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창문,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제시된 마감재 품목과금액 범위 내에서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따라 계약을체결 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해양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체결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계약체결시 해당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바닥재	[강화마루(걸레받이 포함)] – 거실, 주방, 식당, 복도, 안방, 침실 [타일석재 – 현관, [타일] –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바닥, 발코니바닥	바닥난방, 발코니 바닥 방수, 발코니바닥배수 슬리브
벽, 천장	벽지 및 천정지 벽 및 천정도장 장식벽(타일, 시트지 등)주방벽타일 붙임.	벽 : 단열+석고보드+미장 천장 재경량 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우물천정
조명기구	부착형조명기구, 욕실 등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욕실	타일(바닥, 벽) 석재(대리석 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 코킹, 바닥배수구, 바닥난방,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통신배관 배선
주방가구	상·하부장(싱크) 및 액세서리(포함)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주방TV, 음식물탈수기	설비배관, 렌지후드, 전기, 통신배관/배선, 주방배기덕트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드레스룸, 침실붙박이장 세탁실 발코니수전	열배트, 각방온도조절기에어컨냉매배관
창호	문틀 문짝 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 내장, 현관방화문 대피공간방화문

■ 마이너스 옵션 금액

(금액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전용면적) ㎡	59.8570		59.5783		84.5816		비 고
해당동	최상층 11~20층	최상층 21~30층	최상층 11~20층	최상층 21~30층	최상층 11~20층	최상층 21~30층	
금 액	16,914,910	17,201,142	17,002,103	17,289,810	22,284,362	22,680,049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이 미포함된가격이며, 기본형분양가에서 상기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하여 공사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배선기구류 위치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이 공사비를 제외한 바닥, 벽체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미선택 시 기준으로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입되어진 통신기기,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자재 발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및 변경이 불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공사기간의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산정지침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증권및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시설물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품목시공에 대한하자발생은 입주자에게 있으며 관련기준 위반으로 인한법적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공사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시공으로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않아 입주후 인테리어공사로 인하여 소음및 분진이 발생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계약체결에는 계약 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 발코니확장금액(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함)

(금액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전용면적) ㎡	59.8570	59.5783	84.5816	비 고
금 액	9,000,000	9,000,000	10,000,000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공급가격과는 별도로서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설치품목의 미설치로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일괄할증 전체로 산정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공사 세대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확장계약이 불가하며,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두께,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이와 접한 발코니확장세대 확장부위 벽면에 단열재가 시공되어 결로 및 일부 벽체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확장 관련 마감자재 등은본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사유로 인해 조정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견본주택 대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 및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들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확장에 대한비용, 등록세, 취득세는 계약자가부담하여야 함.

■ 입주예정월 : 2013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미도래 중도금과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단, 기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자사전방문 실시

• 당사는 입주하시기 약 1개월전에 실시. • 사전방문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은 사전방문일 이전에 별도 통보예정임.

■ 부대복리 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휘트니스센터, 노인정,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지상·지하주차장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기타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변경되는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청구 청약자에서는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 은 평형으로 기재하지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람. [평형환산방법:형별면적(㎡)×0.3025 또는 형별면적(㎡)÷3.3058]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입주자로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당첨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함.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셔야 하며 이에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발생될 수 있으며 주택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대한주택보증(주)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23조의규정에 따라정보를제공할 수 있음.
• 단지 내 명칭, 동표시 및 외부색채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각종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에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후 관계규정에 따라철거될 수 있음. 단, 평면설계 및 마감 자재등은 촬영보존함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 품목이 포함된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바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체의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아파트의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계약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위의 시설물(공용 조경, 지하주차장, 승강기 의용장, 통신실, 전기실, 기계실 등)과 그외 부분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의 부득이한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2%)이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공급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분양의 시설배치도, 이면도, 각종 인쇄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등의 부득이한경우 동등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등의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용으로사용됨.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등의 설치로 인해 소음피해,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도로와 접한 단지내 일부세대는 소음피해가 있을수 있으며, 청약신청 또는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식재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대관협의 등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등)및 수목위치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시설물에 따른 조경선형이나포장 및 조경시설물에 형태및 위치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등의 각종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의 배치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 차량이 진입할 수 없을 수도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됨으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무지주변 개발지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단지 주변도로의 비시공 또는인접 부지와의 진입관계로 인한 도로레벨 조정등의 방법으로 구조물이시공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기타 유사시설로 인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입면처분화 등으로 인하여 옥탑및 지붕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세대 전면발코니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면 문양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하는것은 불법 사항임을인지함.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동·호수에 따라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실내습도등 생활여건에 따라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로 인하여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발생할 수 있음. • 각종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방식 결정,운영비용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입주 후 구성되는 자치위원회에일임함.
•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및 계약시 각종상황위(민원인, 부동산중개 등)는 당사와 전혀무관한 사항임.
•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하자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제46조에 따라적용됨 • 본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용으로 사용됨.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공용부분의 시설물(계단, 지하주차장, E/L, 등)은 사업계획 승인에 준하며, 이로 인하여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향후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사유가 발생 할 경우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지연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당시의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을 적용하여시공됨.
• 분양계약자가 선택계약하는 발코니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청약 및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및 도로, 소음, 일조, 조망,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등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후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등유지분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수 있음.
•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될 경우 유적이 발굴될 시 발굴문화재 처리에 따른소요기간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시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인주자가 발코니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진동·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법적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시공 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당아파트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임.
•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악취 등에대하여 "을"은 사전 충분한 인지 후 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추후 이와관련된 사항에 대한이의제기를 "갑"에게 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은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금액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건 축 공 사	소 방 공 사	전 기 공 사	통 신 공 사
회 사 명	(주)유성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혜양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주)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주)혜양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감리금액	928,400,000	39,600,000	279,092,670	4,400,000

■ 보증 관련 유의사항

1) 연대보증사 : 대한주택보증(주)
2)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분양보증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5612011-101-0003300	58,438,03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3)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납부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조제4조)
•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말한다. 이하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상태가 3개월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이행청구가 있는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3조)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대상이 아닌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회사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분양한 입주자 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취득하는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변경·통보한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 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의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로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도는 일반에게 분양되는복리시설을 제외한 사항의 발코니 확장, 마이너스옵션부위기타 마감재공사와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18조의보증채무이행방법 구성서류를 제출하지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이 이해관계 있는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는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보증채무 이행할 경우에는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잔금은 그러하지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변경되는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택지비 감정평가 및 기관

구 분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금액(㎡/원)	비 고
택 지 감 정 평 가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1,090,000	공동주택부분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1,100,000	

■ 시공자 : (주)서진종합건설 (135-81-16336) ■ 시행자 : 에스이엔씨 유한회사 (409-86-19184)
■ 견본주택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373-15번지 ■ 분양 문의 : ☎ 062-573-440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및 시행자에게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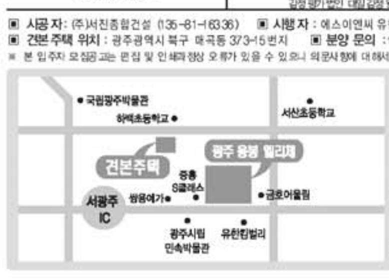

문의 062)573-4400
시행 에스이앤씨유한회사 시공 (주)서진종합건설
자회사 (주)에스앤에스비전 동일산업주식회사